

한국의 TAC 실시배경과 현황

이동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업허가제도에 의하여 어업자원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어업기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어획노력의 증대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남획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허가제도하에서는 과잉노력량에 대한 조정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불법·남획어업이 자행되어 어업자원 고갈현상이 가속화되고 해양오염 증가와 매립·간척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생산성 저하됨으로서 새로운 어업관리제도의 필요성 대두되어 간접적 자원관리방식의 전통적 방법에서 어획량을 직접 관리하는 TAC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되었다. 특히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동북아의 새로운 어업질서 재편으로 어장이 축소되면서 우리 수역내의 직접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 증대되었다. 즉, 국제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됨으로서 국간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업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UN해양법협약 발효로 연안국은 제61조(생물자원의 보호), 제62조(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라 자국 EEZ에서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적절한 보전 및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EEZ에서 자국의 어획량을 결정하고, 잉여분에 대해 타국의 입어 인정해야한다. 우리나라는 '96년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 EEZ내의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조치 이행과 특히 한·일,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상호입어에 대하여 어획할당량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TAC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로서 수산업법('95. 12)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 개정을 통하여 TAC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1999년부터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삼치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시행한 바 있고 2003년의 대상종은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꽃게, 소라, 개조개, 키조개 등 9개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는 다수의 어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종의 조업 및 동일어종에 대한 다수업종 다수어선 조업으로 어종별·어업별·어선별로 적정한 어획량을 할당하기 곤란하고 또한 TAC산정시 해당 업종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어업인 사업의욕 저하 및 채산성 악화 유발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EEZ내 어획량의 적정관리를 통한 과학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하여 실시중인 TAC 제도에 대하여 어획통계, 과학적 자료수집, 어획관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